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특화단지지원단 신설〉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5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5.
3. 회 부 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AX와 DX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며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으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 입주기업 간의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무엇보다 특화단지가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진정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등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은 모두

강력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현행법에는 특화단지의 지정과 기본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제도 신설(안 제48조의2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각 특화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

2. 특화단지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안 제48조의2제2항)

특화단지지원단이 수행할 9개 핵심 사업을 법률로 명시하여 역할을 명확히 함.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창업 및 유치 촉진,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산업 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산학연

교류 협력 활성화, 산업 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

3. 특화단지지원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특화단지지원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단을 제33조제2항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4.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취소 및 관리 체계 구축(안 제48조의2제6항 및 제7항)

지정된 특화단지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도 지정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운영을 위한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창업 및 유치 촉진 3.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4.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5.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반조성 및 활용 6.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7.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현행	개정안
	8. <u>특화단지 및 관련 산업 동향 조사·분석</u> 9. <u>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단지지원단 운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④ <u>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지원단을 제33조제2항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u> ⑤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u> ⑥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u> ⑦ <u>그 밖에 특화단지지원단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단지로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함²⁾.

유사 입법례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또는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단지로³⁾,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함⁴⁾.

-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⁵⁾ 및 동 시행령⁶⁾과 이에 따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⁷⁾에 따라 개별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특화단지추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개별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상설기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상설기구인 특화단지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임⁸⁾.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생략)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지역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설기구 설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통해 특화단지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특화단지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화단지추진단 또는 지원단의 지정적격과 관련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① 대학,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도기업과 ⑤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을 특화단지추진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⁹⁾,

9)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③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제2조에 따른 선도기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개정안은 비영리법인만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¹⁰⁾.

각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산업특성과 입지성격에 따라 비영리법인 외에 대학,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련기업이나 이들 관계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 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동일 산업단지가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경우¹¹⁾ 동일 기관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추진단의 기능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지원단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지원단의 지정적격을 전략산업 특화단지추진단에 준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 경기 용인: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23.7.),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21.2.)

충북 청주: 이차전지 전략산업 특화단지('23.7.),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21.2.)

충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전략산업 특화단지('23.7.),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21.2.)

다음으로 특화단지 및 운영지원기구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별 특화단지¹²⁾와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특화단지추진단¹³⁾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개별 특화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나¹⁴⁾, 개정안은 특화단지지원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¹⁵⁾ 특화단지의 지정권자와 특화단지지원단의 지정권자를 이원화하고 있음.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 1> 특화단지 및 운영지원기구 지정절차

구분	특화단지	추진단·지원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u>산업통상부장관 지정</u>	<u>산업통상부장관 지정</u>
소·부·장 특화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신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u>산업통상부장관 지정</u>	<u>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지정</u> (산업통상부장관 협의)

이와 관련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특화단지와 특화단지추진단의 지정권자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특화단지지원단은 개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운영지원을 위한 실무지원조직이므로¹⁶⁾ 특화단지와 특화단지지원단의 지정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1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② 특화단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창업 및 유치 촉진
3.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4.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5.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반조성 및 활용
6.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7.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8. 특화단지 및 관련 산업 동향 조사·분석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지원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단지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있음¹⁷⁾.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특정 단체에 대해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점,

현행법상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규정¹⁸⁾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 입법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1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48조의2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지원단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¹⁹⁾.

현행법 제33조제2항 각호에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을 열거하고 있으며²⁰⁾ 개정안 제48조의2제2항 각호에서 특화단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점²¹⁾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에 개정안에 따른 특화단지지원단을 명시하는 한편 개정안 제48조의2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화단지지원단의 사업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지원단을 제33조제2항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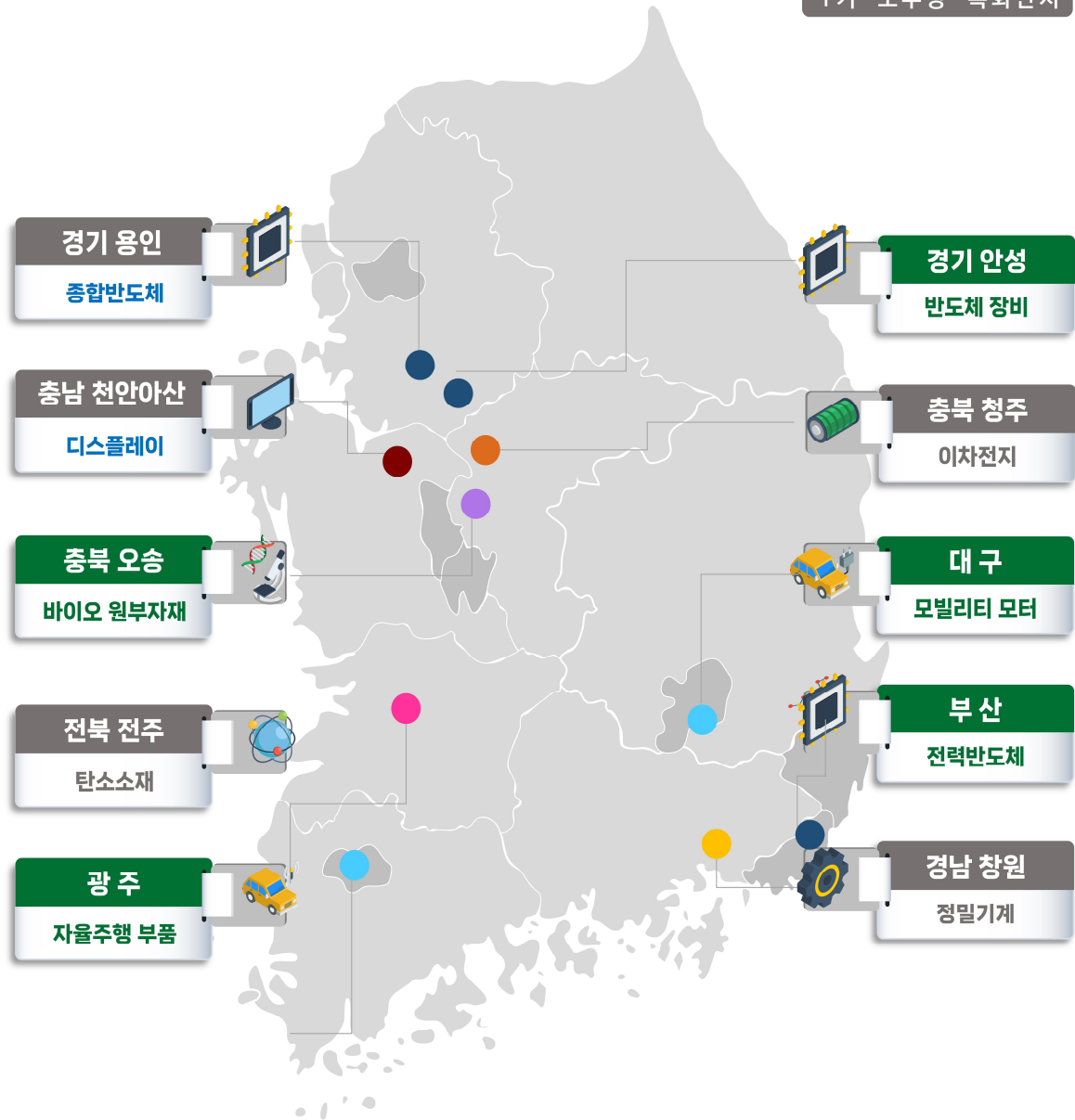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② 특화단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창업 및 유치 촉진
3.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4.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5.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반조성 및 활용
6.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7.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8. 특화단지 및 관련 산업 동향 조사·분석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부장 특화단지

2기 소부장 특화단지

1기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4) ● 디스플레이(1) ● 이차전지(4) ● 자동차(2) ● 바이오(1) ● 탄소소재(1) ● 기계(1)

문 의 처
02)6788-5460